
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

관세법 제241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,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5. 31.

관 세 청 장

할당관세품목	상세품명 및 규격	세번부호(HSK)	적용기간
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)	조주정	2207.10-1000	2023.07.01. ~ 2023.12.31.
고등어	중량이 300그램 이상인 것	0303.54-0000	2023.06.01. ~ 2023.08.31.
돼지고기(신선한 것이거나 냉정한 것)	삼겹살	0203.19-1000	2023.06.01. ~ 2023.12.31.
	기타	0203.19-9000	
돼지고기(냉동한 것)	삼겹살	0203.29-1000	
	기타	0203.29-9000	
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,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(조당 -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)	사탕무당(편광도수가 98.5도 이하인 것)	1701.12-1000	
	사탕무당(편광도수가 98.5도를 초과하는 것)	1701.12-2000	
	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	1701.13-0000	
	그 밖의 사탕수수당(편광도수가 98.5도 이하인 것)	1701.14-1000	
	그 밖의 사탕수수당(편광도수가 98.5도를 초과하는 것)	1701.14-2000	
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,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(기타)	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	1701.91-0000	
	기타	1701.99-0000	
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	사료용	2303.30-1000	
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(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)	사료용	2306.60-0000	

끝.